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가단7142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 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8. 1. 24.

판결 선고 2018. 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04,740원 및 그 중 7,967,980원에 대하여는 2014. 5. 7.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18,436,76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각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005,925원 및 그 중 9,959,975원에 대하여는 2014. 5.

7.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3,045,95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SM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12. 28. 23: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1-1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간석고가차도 방면에서 간석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뒤이어 E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선행사고로 인하여 편도 2차로 전방에 쓰러져 있는 망인의 다리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4. 1. 1. 07:21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2014. 5. 6. 19,919,950원, 2014. 11. 18.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유족들은 원 ·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 ·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각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1,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각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 ·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망인과 그 유족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207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 16896호). 원고는 2016. 1. 13.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원리금 46,091,9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C과 E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1, 2차 사고를 발생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원 · 피고 차량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인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피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고, 2차 사고시 충돌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차 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뿐 망인의 사망과 2차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툼다.

나. 판단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부근이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당시 사고 장소에서 원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한 후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정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혹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 속도를 줄여

정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을 피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려 하다가 망인의 다리 부분을 역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한,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2005다57189 판결 참조).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2차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역과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1.항에서 본 관련 소송에서 피고 차량의 충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피고 차량에 의한 충격도 망인의 사인인 다발성골절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망인은 원 ·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각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 ·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데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사고발생의 경위와 내용, 충격의 정도와 순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원 · 피고 차량 운전자의 내부관계에서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60%, 피고 차량 운전자 40%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6,404,740원(손해배상금 합계 116,011,850원(19,919,950원 + 50,000,000원 + 46,091,900원) × 40%) 및 그 중 7,967,980원(19,919,950원 × 4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4. 5. 7.부터, 20,000,000원(=50,000,000원 × 4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4. 11. 21.부터, 18,436,760원(=46,091,900원 × 4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1.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미림